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공정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 요구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국유지(○○리 ***-*번지) 일부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보강토블럭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사전처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① 창고 이전 장소인 신청인의 사유지에 설치된 상수도관·오수관의 철거 ② △△면의 주민 안전조치(토사 유실 방지, 유수관 설치 등)가 선행적인 조치가 필요하니 이를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파주시의 불평등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리 ***-*번지를 이용한 차량, 농기계 이동금지, 농작물 경작금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공정한 행정명령이 되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신청민원에 대하여 담당 부서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수도관 이전과 관련하여 상수도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조사 결과 상수도 관로를 이설할 수 있는 부지에는 건축물이 있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3동과 농작물 철거조치가 선행된 후 상수도 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 또한 오수관 이설에 대하여, 하수도 업무 담당 부서는 해당 부지의 하수관로 설치에 대하여 토지주의 사전 사용승낙을 받아 「파주시 어유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 구간으로 철거 및 이설이 불가하다는 주장함.

- 국유지의 불법 점유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와 주민 안전 조치 이행 요구에 대하여,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먼저 농기계 이동금지 조치 요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도로가 포함되며, 이미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차량·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하다. 농작물 경작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후 경작이 가능하며, 일부 소하천구역은 적성면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한 후 경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사 유실 등의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요구는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했던 것을 원상복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행위자가 토사 유실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사실관계

- 민원신청 경과 및 국유재산(구거부지) 불법점유 등과 관련하여
 -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경과를 토대로 현장을 조사한 바, 국유재산(구거)에 대해 신청인 및 ○○리 ***-#번지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현재 해당번지와 접한 구간은 이 대지와 같은 높이로 옹벽을 쌓고 성토하여 한 필지처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부친 소유의 번지의 경우, 이웃한 번지와의 경계에 설치된 보강토를 쌓고 성토되어 있는 상태로 이 보강토를 철거할 경우, 대지의 높낮이가 있어 신청인 대지의 토사가 흘러 이웃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태임.

□ 관계 법령 등

○ 농어촌정비법

-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7조(의견제출),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하면서 위법한 사항들을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신청인이 선행적으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없다 할 것으로 신청인의 민원조사를 종결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국유재산(○○리 ***-*번지)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옹벽 및 보강토블럭을 설치한 후 성토하여 사용 중인 것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라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후 민원이 제기된 주변의 국유재산이 지목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할 것을 “의견표명” 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도시공원시설물에서의 추락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2021. 10. 2. 13:20 경 ****공원 내의 팔각정자(높이 약 3.5m) 난간의 큰 공간 사이로 동반했던 3세의 손녀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팔각정자 난간의 공간은 가로 34cm, 세로 44cm, 대각선 58cm이었으며, 난간에 설치된 의자의 폭은 20cm로 성인의 몸도 통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임에도 별도의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로 사고 직후 119구급차를 불러 급하게 손녀를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두개골 골절과 동공 무반응(정지) 및 뇌출혈이 있는 손녀를 긴급하게 수술하는 처치를 하게 되었음. 이후 현재는 수술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며 향후 성장과정에서의 후유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고충이 심대한 상태일 뿐 아니라 사고현장을 목도한 충격으로 큰 트라우마와 할아버지로서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고 직후 피신청인(공원관리사무소)을 방문하여 안전조치를 촉구하고 사고대책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신청인은 팔각정 낙하사고(2021. 10. 2.)의 발생원인은 공원관리과의 잘못된 관리라는 점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팔각정의 보강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팔각정은 유아 놀이시설이 아닌 산책로

이용자들의 컴퓨터로 팔각정에 유아를 동반할 경우 보호자가 유아를 돌봐야 하는 사항으로 공원관리과의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며, 도의적으로 공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여 영조물 배상보험 청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함.

□ 사실관계

○ ****공원 팔각정 등에 대하여

- 신청인은 ****공원의 팔각정은 높이 3.5m이고, 팔각정 위 난간의 한 칸 공간 폭 또한 가로 34cm, 세로 44cm, 대각선 58cm로 성인의 몸도 들락날락 할 정도였으며, 난간의 앞부분에 있는 앉을 수 있는 의자의 폭 역시 20cm로 어린아이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오르려다 추락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안전조치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었으며, 다만, 2022. 1. ~ 2. 사이에 팔각정자 내 난간 간격이 넓어 반원형태의 주목 난간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상태였으며, “추락위험, 난간에 올라서지 마시오” 라는 표시판이 올라가는 계단의 최상단에 1개와 팔각정 내 바닥면에 한 칸을 띄어 총 3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공무원의 민원처리 대응과 관련하여

- 신청인은 2021. 10. 13. 17시경, 피신청인과 추락사고 발생 통보 및 긴급한 안전조치 촉구를 하였으며, 2021. 10. 21. 17시 경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소장과 팀장을 면담한 사실을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 준 무책임한 발언과 분노를 자아내는 발언에 대하여 파주시장의 엄중한 조사와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 관계 법령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 국가배상법[법률 제14964호]
 - 제2조(배상책임), 제3조(배상기준), 제3조의2(공제액)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38조(안전조치)

□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공원 내의 팔각정자(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동반했던 아동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후 그 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언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한 이유와 같은 사항들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또한 있음.
- 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첫째, 피신청인은 파주시 관내의 정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은 물론 시설물에 접근하는 통로 등에 안전 및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성 안내표지판 또는 이용수칙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둘째, 신청인은 국가배상법령에 따른 영조물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 함.